「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70호, 2009. 6. 19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2월 6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에 대한 위생 및 품질관리 의무화의 일환으로 「주문자상표부착(OEM)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의 수출국 제조·가공업체 위생 점검의무를 신설하는 「식품위생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생 점검에 필요한 점검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제정고시(안)을 입안 예고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위생점검실시기관이 주문자상표부착(OEM) 식품등을 생산하는 수출국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함에 있어 세부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확보 (제2조제1항)

(1)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의 위생점검시 객관적인 점검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원료, 시설, 공정, 완제품 관리, 소비자 정보 및 훈련의 세부 점검기준 마련

(3)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함으로서 객관성 확보 및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71호, 2009. 6. 22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중 납, 카드뮴 등 유해중금속, 잔류용매, 시안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유해물질과 대장균 등 미생물 규격을 신설·강화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과산화벤조일 등 30 품목의 성분규격 제·개정

(1)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중금속 규격 강화 또는 신설(Ⅱ. 제3. 가. 12, 13, 나. 83, 85, 93, 96, 97, 98, 101, 108, 119, 122, 133, 145, 146, 147,149, 153, 158, 163, 180, 181, 182, 185, 186, 187, 188, 192, 196, 204)

(2) 제조과정 중 생성될 수 있는 잔류용매, 시안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유해물질 규격 신설(Ⅱ. 제3. 나. 83, 93, 98)

(3)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 진균수 등 미생물 규격 신설(Ⅱ. 제3. 나. 108, 122, 149, 153, 196, 204)

(4) 성분규격 개정을 통한 식품첨가물 안전성 확보

나. 일반시험법 중 일부 제·개정

(1) 원자흡광광도법의 개정(Ⅳ. 19)

(2)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및 수은시험법의 신설(Ⅳ. 37, 38)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 환경부 공고 제2009-215호, 2009. 6. 22 -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공정중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한 오존살균을 하였을 경우에 브롬산염이 생성되는 문제점이 있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안 예고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먹는샘물 제조 시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하여 오존살균을 하였을 경우 소독부산물을 제거토록 함.

(1) 먹는샘물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오존살균 후 소독부산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기에 먹는샘물 수질기준 중 '브롬산염'에 대하여 0.01mg/L이하 수질기준을 설정함.

※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